

제298회 임시회
2011. 3. 17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3. 17.(목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권기수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3월 9일

(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 기 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범조항을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 -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
- 나. 시험수수료(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)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(안 제2조)
- 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(안 제3조, 제4조)
 -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 으로,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
 - “시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정에 필요한”으로 개정.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-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도보 고시 조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적기에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“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여비조례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정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39조 및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41조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9조제 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여비조례</u>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</p>	<p>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41조제 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</u>」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</p>
<p>제3조(징수방법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</p>	<p>제3조(징수방법) ① <u>제2조에</u>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시정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건설기술관리법

제24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12.29]

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[국토해양부령 제315호, 2010.12.20, 일부개정]

제41조(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)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,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. 다만,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0.12.20]

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는 제72조로 이동 <2010.12.20>]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